

조선 후기 竝有喪의 실제와 禮論 - 謙齋朴聖源의 喪中雜識를 중심으로 -

The Actual State and Ritual Theory of Duplicated Funerals in Late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Sangjungjobji of Kyumjae Park sungwon -

저자 (Authors)	김윤정 Kim Yunjung
출처 (Source)	한국문화 , (90), 2020.6, 197-231 (35 pages) Han'guk Munhwa : Korean Culture , (90), 2020.6, 197-231 (35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Publish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5380
APA Style	김윤정 (2020). 조선 후기 竝有喪의 실제와 禮論 - 謙齋朴聖源의 喪中雜識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90), 197-23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6 09: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조선 후기 竝有喪의 실제와 禮論*

- 謙齋 朴聖源의 「喪中雜識」를 중심으로 -

김윤정**

1. 머리말
2. 병유상의 시행과 절차적 변용
 - 1) 屬纊-成服: 병유상의 발생과 변용
 - 2) 發引-吉祭: 병유상의 輕重과 先後
3. 병유상의 쟁점과 예설 논의
 - 1) 병유상의 상복과 變除
 - 2) 병유상 중 禫祭 시행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상례는 유교의 孝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례이자, 급박한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에 대처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였다. 특히 연이은 죽음으로 동시에 상례를 치르는 竝有喪은 行禮의 과정에서 重喪과 輕喪을 구분하고 의례의 차등을 구현하는 복잡한 變禮에 해당되었다. 또한 전근대시기 전란과 전염병으로 인한 병유상이 빈번했던 만큼, 常禮에 규정되지 않은 변례의 상황에 대응하여 의리에 합당한 의례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예설논쟁이 이루어졌다.

병유상 관련 논의는 『禮記』 「曾子問」의 부와 모, 군주와 부모 등의 병유상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儀禮經傳通解續』에서는 ‘병유상’이 별도의 항목으로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규정되었다. 유교 의례의 실천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병유상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17세기 沙溪 金長生(1548-1631)의 『疑禮問解』에도 ‘병유상’의 항목이 따로 마련되었다. 18세기 조선의 예설을 집대성한 謙齋 朴聖源(1697-1767)의 『禮疑類輯』에서 병유상은 49조목으로, ‘喪變禮’ 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 17세기 예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18세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정교화된 예설논쟁이 진행되었고, 병유상 관련 담론 역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병유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이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례의 범주화라는 측면에서 『禮疑答問分類』와 『예의유집』의 병유상 관련 항목이 자세히 분석되었다.²⁾ 또한 왕실의 상례인 國恤과 私家의 상례가 겹치는 병유상에 대한 예설논쟁을 중심으로, 왕에 대한 尊尊과 부모에 대한 親親의 갈등에 대한 의례적 규정이 『國朝喪禮補編』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이 검토되었다.³⁾ 논쟁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병유상의 사례를 밝힌 연구도 이루어졌다. 영조 33년(1757) 1달여 간격으로 발생한 貞聖王后와 仁元王后의 국휼을 통해 병유상에 따른 상례 절차의 변용을 규명하였다.⁴⁾ 왕실의 병유상은 私喪의 예학적 논의를 반영했지만, 물력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

병유상처럼 복잡한 의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기류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선 후기 예의 실천이 증시되면서 상례의 진행을 기록한 일기류 자료들이 상당수 남아있고,⁵⁾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⁶⁾ 최근 새로 공개된 박성원의 「喪中雜識」은 1750년 3월 19일부터

- 1) 김윤정, 2013 「謙齋 朴聖源의 禮學과 『禮疑類輯』의 성격」, 『한국문화』 61, 172면.
- 2) 장동우, 2018 「變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家禮』연구의 특성 및 함의: 『禮疑答問分類』와 『禮疑類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 3) 김윤정, 2018 「조선후기 王朝禮와 私家禮의 변주: 國恤 중 사가례 논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9.
- 4) 김윤정, 2018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98.
- 5) 최은주, 2009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 6) 김미영, 2008 「조선후기 상례의 미시적 연구: 류치명의 상례일기 「考終錄」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2; 오용원, 2009 「考終日記와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 『대동한문학』 30; 김윤정, 2013 「18세기 사복師服의 성격과 실제: 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63.

1752년 8월 9일까지 어머니, 형, 형수 및 아들의 상례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병유상의 실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박성원은 밀양박씨로 字는 士洙이고 호는 謙齋, 廣巖이다. 言官과 講官을 역임한 문신으로 세손이던 정조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정조 즉위 후 이조 판서로 追贈되고 謚號를 하사받았다. 박성원은 대표적인 洛論 학자이자 『사례편람』의 저자인 陶庵 李緯(1680-1746)의 문인으로,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28권에 달하는 거질의 예서인 『예의유집』을 편찬했고, 『사례편람』의 교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⁷⁾ 또한 스승의 心性論을 충실히 계승하여, 이재 사후 벌어진 「寒泉詩」 논쟁에서 湖論인 南塘 韓元震(1682-1751)의 人物性異論을 비판했다. 그는 스승의 家狀과 年譜를 쓰고, 문집 편찬을 주도하는 등 이재의 高弟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낙론의 道統이 農巖 金昌協(1651-1708)의 손자인 漢湖 金元行(1702-1772)으로 이어지면서, 박성원의 역할과 활동은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박성원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문집이 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⁸⁾ 최근 남양주의 증가에 소장되어 있던 박성원의 미간행 문집인 『謙齋集』, 『廣巖集』, 『廣巖稿』와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⁹⁾ 박성원의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논문은 박성원 문집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로서, 「喪中雜識」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병유상의 이론과 실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상중잡지」의 상례 절차를 낱짜별로 정리하여, 병유상에 따른 변용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을 따른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병유상에

7) 김윤정, 2014 「白水 楊應秀의 『四禮便覽辨疑』 연구」 『규장각』 44.

8) 정조의 어명으로 간행된 『예의유집』과 산견되는 예문답을 중심으로 박성원의 예학을 정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윤정, 2013 앞의 논문; 장동우, 앞의 논문). 그 외에는 湖洛論爭의 과정에서 박성원의 心性論이 일부 언급되었을 뿐이다(권오영, 2003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조성산, 2007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9)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기탁되어 한국학자료총서로 출간되었다. 미간행 문집인 『謙齋集』 6책, 『廣巖集』 18책, 『廣巖稿』 17책과 『保民格言』, 『謙齋年譜』 등을 합쳐 『박성원문집』으로 편집·간행되었다. 「상중잡지」는 『광암집』 권21이고, 한국사료총서 60 『박성원문집』 3(2018년 간행)에 수록되어 있다.

따른 현실적인 변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병유상의 진행을 위해 喪의 輕重을 따지고 절차의 선후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병유상의 절차에서 드러나는 주요 쟁점에 관한 예설 논의를 분석하였다. 박성원은 「상중잡지」에 병유상 관련 논쟁적인 예설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새로운 병유상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병유상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變除 절차와 後喪 중 前喪의 禫祭 시행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박성원은 이재의 예설을 중심으로 先儒說을 고증하고 당대의 여러 학자들에게 질문하여 행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목하였다.

전염병에 취약한 전근대시기에 병유상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병유상의 시행 과정에서는 『가례』 등의 예서에 일일이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들이 제기되었다.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예서에 정해진 절차들이 연기되었고, 투병 중인 자손들을 대신하여 노비들이 의례를 담당하는 경우들이 속출했다. 예학에 밝았던 박성원조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병유상의 상황에서는 예학적 실천보다 현실적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상중잡지」에는 예설과 실제의 차이, 학문과 현실의 괴리가 선명하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최대한 의리에 맞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다.

2. 병유상의 시행과 절차적 변용

박성원의 집안은 楊洲 廣巖(현 남양주 화도읍)에 세거하였다. 박성원은 1748년(영조 24) 5월 石室院村으로 이거하였는데, 김창협이 講學했던 집터를 구매하여 새로 집을 지었고 석실서원을 중심으로 김원행과 교류하였다.¹⁰⁾ 박성원은 석실의 새집을 ‘石灘新居’라 칭했고, 어머니와 처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광암의 옛집은 ‘廣巖舊舍’라 칭했는데 사당이 모셔져 있는 종가로서, 박성원의 큰형인 박최원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광암은 약 반나절 거리로

10) 『謙齋年譜』 권1, 戊辰, 庚午 참조.

서, 이후 두 곳을 중심으로 병유상이 거행되었다. 장자 박최원은 후사가 없어 박성원의 次子 宗植을 계후자로 삼았다. 박성원의 모-형-형수의 喪은 박종식의 조모-부-모의 상이었다.¹¹⁾ 박종식이 3상의 喪主였지만, 실제 상례의 진행은 박성원이 주도하였다.

1) 屬纊-成服: 병유상의 발생과 변용

1750년 3월 19일 박성원의 어머니인 연일정씨(1670-1750)가 석탄의 집에서 사망했다.¹²⁾ 먼저 새숨을 코에 대어 사망을 확인하는 屬纊을 행하고 영혼을 부르는 復을 거행했다. 복은 婢 세매가 上衣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평소의 호칭에 따라 ‘大夫人抹樓下鄭氏復’이라고 3번 부르는 방식으로 행했다. 易服 시에는 『사례편람』에 따라, 삼년복을 입는 사람만이 관을 벗었고 기년복을 입는 손자들은 관을 벗지 않았다.¹³⁾ 역복 후 奠을 올리면서 고례의 始死奠임을 명시했는데, 역시 『사례편람』을 따른 것이었다.¹⁴⁾

목욕은 박성원의 처 연안아씨가 2명의 婢를 거느리고 시행했고, 襲할 때 上衣

- 11) 「상중잡지」는 박성원의 입장에서 호칭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중과 선후 등의 논쟁은 종손인 박종식을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3상의 의절을 함께 검토하는 2절부터는 조모-부-모로 호칭을 통일하였다.
- 12) 「상중잡지」를 정리한 병유상의 절차는 <표 1> 참조. 「상중잡지」의 내용은 연월일로 간략히 표시하였고, 해당 날짜와 일치할 경우는 따로 주를 달지 않았다.
- 13) 『家禮』 ‘初終’의 ‘易服不食’은 妻·子·婦·妾이 冠을 벗는다고 규정했으므로, 삼년복을 입는 사람이 冠을 벗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외 冝年服이나 大功服을 입는 경우 冠의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김장생과 송시열은 기년복과 대공복을 입는 사람들도 冠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時俗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禮經에 확실한 근거가 없고 애통한 경황 중이라도 머리에 관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禮意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삼년복과의 구분을 강조하여 기년복과 대공복을 입는 사람들은 관을 벗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윤정, 2020 「조선후기 四禮의 전형: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145면).
- 14) 『사례편람』은 『儀禮』 「士喪禮」에 따라 사망 후 신을 의지하게 하는 절차인 始死奠을 역복 이후 행하도록 했다. 시사전을 행하면 『家禮』에 수록된 襲奠은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四禮便覽』 권3, 「喪禮·初終」, “(按)古禮有始死奠, 而家禮則有襲奠, 備要仍之, 蓋以襲在當日故也. … 茲依古禮, 移置于此.”: 「喪禮·襲」, “(按)家禮此奠, 即古禮之始死奠, 既從古禮, 則此奠不設爲宜”].

는 『상례비요』에 따라 圓衫을 사용했다. 『사례편람』은 古制를 근거로 深衣와 袷衣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례비요』에 따랐음을 밝혔다.¹⁵⁾ 도성에 거주하는 박종식의 장인 安宗茂에게 사람을 보내, 구멍이 없는 구슬인 無孔珠를 구해 와서 飯습을 거행했다. 무공주의 사용은 俗禮를 따른 것으로, 『사례편람』에도 수록되어 있었다.¹⁶⁾ 이어 靈座와 魂帛을 마련했는데, 『사례편람』을 따라 흰 모시를 말아서 묶는 ‘結帛’의 방식으로 혼백을 만들었다. 박성원은 속백과 결백의 방식을 모두 인정한 『상례비요』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¹⁷⁾

사망 다음날(2일째)인 20일에는 小斂을 행했다. 박성원은 丘濬의 『家禮儀節』에 따라 絞布를 묶고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소렴을 마쳤다. 『가례』에서는 부모가 소생하기를 기다리는 효심을 중시하여 소렴에서 효포를 묶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반면 古준은 『의례』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가례』는 『서의』를 따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날씨가 더울 때에는 『의례』에 의거하여 염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장생도 古준의 설이 이치에 맞다고 인정했다.¹⁸⁾ 박

15) 현전하는 『사례편람』의 ‘陳襲衣’ 諸具 항목에는 高麗인 『儀禮』와 『周禮』를 근거로 하는 심의와 단의뿐만 아니라 元삼도 수록되어 있다. 박성원은 元삼의 사용을 『사례편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박성원이 참고한 필사본 『사례편람』과 이후 간행된 목판본 『사례편람』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편람』 필사본과 간행본의 차이는 김윤정, 2014 앞의 논문에 자세하다.

16) 『四禮便覽』 권3, 「喪禮·襲」 “諸具【飯습】 貝三【(備要)金·玉·錢·貝俱可。○俗用無孔珠。】”

17) 박성원의 이러한 서술에는 2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첫째,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의 ‘결백’이 다르다는 점이다. 『상례비요』는 『가례의절』을 인용하면서, 束帛과 同心結 2가지 형태의 혼백을 모두 인정했다[『沙溪全書』 권31, 「喪禮備要·襲」 “(魂帛之具) (白絹)或苧布三四尺, 所以爲魂帛者, 或束帛, 或同心結, 二者俱可. (儀節)束帛之制, 用絹一匹卷兩端, 相向而束之. 結之制, 摺帛爲長條, 而交互穿結, 上出其首, 旁出兩耳, … 二者, 俱可”]. 『가례의절』에서는 ‘束帛之制’가 명주를 말아서 묶는 것이고, ‘結之制’가 사람모양처럼 머리와 발을 만드는 동심결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례편람』에서는 『家禮』의 ‘結白絹’ 조문을 근거로 혼백의 제도를 ‘결백’으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상례비요』의 속백을 의미한다[『四禮便覽』 권3, 「喪禮·襲」 “(按)今俗魂帛之制各殊, 而於禮俱無所當. 家禮既有結白絹之文, 則只當依此用結帛也”]. 둘째, 간행본 『사례편람』의 諸具에 『가례의절』의 ‘동심결’이 인용되어, ‘按說’과 모순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박성원이 참고한 필사본 『사례편람』에는 ‘동심결’이 인용되어 있지 않았고, 양응수의 「四禮便覽辨疑」에서 이 문제가 비판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김윤정, 2014 앞의 논문, 75면).

성원은 당시 매우 덥고 공간이 답답하여 구준의 설에 따랐음을 밝혔다. 또한 이날 광암의 집에 마련해두었던 棺材를 옮겨서 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렴 시 자손들의 복색은 『사례편람』에 따라 두건 위에 免布를 더하는 방식으로 免을 했고, 環經과 首經·腰經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시속에서는 초종 때 머리를 풀었다가 소렴을 마친 후에 머리를 묶고 두건을 쓰기 때문에, 고례에서 素冠을 벗고 마승과 문포로 머리를 묶는 제도를 쓸 수가 없었다. 『사례편람』에서는 시속을 고례대로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마광의 설을 근거로 두건에 麻繩(참취)와 免布(자취)를 더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¹⁹⁾ 또한 김장생은 『가례』에는 없지만, 고례를 인용하여 백건에 환질을 더한 차림으로 소렴을 마치고, 다시 수질과 요질을 하는 절차를 『상례비요』에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례』에서 해당 절차를 뺀 것은 “슬프고 황망한 가운데 이러한 의절을 논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가례』를 따라 환질과 수질 등을 갖추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²⁰⁾

3일째인 21일에 大斂을 거행했다. 저녁에 관을 별실에 들였는데 장소가 좁아서 大斂牀을 따로 설치하지 못하고, 관 위에 임시로 橫木을 놓고 대렴을 행했다. 박성원은 장소가 협소할 경우 관 속에서 대렴하는 것을 인정한 김장생의 예설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렴 후 靈牀을 설치하고,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설에 따라 혼백 상자는 이불과 베개의 사이에 두었다. 또한 代哭을 그치면 그날 바로 夕哭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례편람』에 따라 늦은 시간임에도 석곡을 거행했다.²¹⁾

18) 『家禮增解』 권6, 「喪禮·小斂」 “未結以絞, 未掩其面. 蓋孝子猶俟其復生, 欲時見其面故也. 【儀節, 儀禮有卒斂之文, 無未結絞未掩面之說, 家禮蓋本書儀也. 若當暄熱之時, 依儀禮卒斂, 爲是掩首結絞, 先結直者, 後結橫者. ○沙溪曰, 丘氏所論, 似有理.】”

19) 『四禮便覽』 권3, 「喪禮·小斂」 “(按)斬衰括髮之制與齊衰之免相等, 蓋古禮, 親始死, 露笄紒, 將小斂, 乃去笄紒, 著素冠, 斂訖又去素冠, 於是時也, 頭無所著, 故以麻·免代之, 而今則始死被髮, 斂後束髮, 而例著頭巾, 既著頭巾, 則麻·免之制, 似無所施, 固當從古禮去頭巾, 而只用麻·免, 習俗之久, 有難猝變, 嘗見溫公之說有曰, 齊衰以下著頭巾, 加免於其上, 此則只言齊衰, 而不及於斬衰, 然免既加於其中, 則括髮之麻, 亦無不可施之義, 愚意以爲, 無論斬齊衰, 皆當著頭巾, 而加之以麻·免, 此所謂頭巾, 卽丘氏所謂白布之中也.”

20) 『四禮便覽』 권3, 「喪禮·小斂」 “(按)備要有將小斂, 白巾環經, 既遷尸, 拜賓, 襲經之文, 蓋據古禮也. 然孝子哀遠罔極之中, 似未暇論於此等儀節, 家禮之闕而不書, 無亦以是耶? 茲依本文並不錄.”

『가례』를 기준으로 하는 상례의 절차에서는 4일째인 22일에 성복을 행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역병의 유행으로 상을 치르는 사람이 많아 시장에서 喪布를 구할 수 없어 상복을 마련하지 못했다.²²⁾ 이에 성복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奠만 올렸는데, 『사례편람』에서 강조된 1日 1奠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²³⁾ 지인의 도움으로 軍門의 發賣布를 구해 겨우 상복을 만들어, 5일째인 23일에 성복을 행했다. 『사례편람』에 따라 성복 시 帶와 腰姪을 갖추고 散垂하여 양끝을 풀어 놓았다. 졸곡 때 묶었다. 이러한 방식은 소렴 후 요질을 산수했다가 성복 때 묶는 『상례비요』와 차이를 보인다. 『상례비요』는 『儀禮』 「士喪禮」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사례편람』은 『家禮』 「成服」의 ‘散垂三尺’ 조문을 따르고자 했다.²⁴⁾ 또한 이날 관을 싸고 진흙을 바르는 塗殯을 행했다.

정씨 상례의 경우, 80세 노모를 위한 棺材와 斂具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므로,²⁵⁾ 성복 절차가 하루 늦어지기는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성빈까지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박성원은 황망한 가운데 한가로이 행할 바가 아님을 인정하면 서도, 틈틈이 笏記를 작성하여 행례의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후 역병이 확산되면서, 박성원의 처를 시작으로 온 가족들이 고열과 설사 등의 병증에 시달렸고, 여종이 朝夕哭 등을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²⁶⁾

4월 10일 형 박최원이 광암의 옛집에서 사망하면서 병유상이 시작되었다. 석탄의 여차에 있었던 박최원은 4월 5일 광암에 일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 당시 석탄에 있었던 박성원과 아들 종식, 광암에 있었던 동생 朴泰源 등이 모두 병을 앓고 있었다. 박최원의 계후자였던 종식은 아픈 몸을 이끌고

21) 『四禮便覽』 권3, 「喪禮·大斂」“(按)代哭既止, 朝夕哭當自此日始.”

22) 1750년 3월 22일 “京外遭喪者至多, 市上喪布, 亦難求買, 尹僊就聘因緣軍門, 僅得大將【金聖應】手決而買來發賣布, 是日既暮始至, 故未及成服.”

23) 『四禮便覽』 권3, 「喪禮·初終」“(按) … 如無閣餘酒脯之屬, 雖別具亦可, 且一日一奠, 誠不忍廢.”

24) 김윤정, 2020 앞의 논문, 146-147면.

25) 1750년 3월 19일 “襲斂諸具, 曾已備置.”

26) 1750년 3월 23일 “又慮遺忽差錯, 作小笏記, 行事之際, 逐節照檢, 此非被髮哭擗中所暇爲, 而亦有所不免矣. ○自是以後, 室人繼痛危劇, 俗忌焚香哭祭而此甚無稽, 未敢廢闕. 至渾舍皆病, 無人將事, 使婢子行之.”

광암으로 달려가 겨우 축광을 할 수 있었다.

모상을 치른 후 물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지 못해 13일에야 襲을 거행했다. 안중무가 喪具를 마련해 주었고, 당시 충청감사였던 洪啓禧가 보내준 書室 기와값을 사용하여 습렴에 필요한 의복을 갖추 수 있었다. 습이 늦어지고 시신에 부기가 심해져 같은 날 바로 소렴을 거행했다. 비록 상중이지만, 습렴의는 길복을 쓴다는 先儒說에 따라서 습에는 深衣, 소렴에는 道袍를 사용했다.²⁷⁾ 혼백을 만들 白苧布를 구하지 못해 14일에야 혼백을 만들고 영좌를 설치할 수 있었다.

12일에 해야 하는 대렴은 15일에 거행되었다. 棺材를 구하지 못하여 이 날에야 겨우 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관 후 성빈하는데 필요한 일꾼이 부족하여, 미리 땅을 파서 관을 안치한 후 관 위에서 대렴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렴과 성빈을 마칠 수 있었다.

13일에 해야 하는 성복은 16일에야 행할 수 있었다. 박성원의 차자인 박종식은 박최원의 계후자로서 喪主가 되었지만, 당시 병증이 심하여 성복하지 못했다. 박종식의 처 죽산안씨는 혼인 후에도 계속 서울의 친정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박최원의 처와 박성원만이 이 날 성복했다. 박종식은 22일에야 겨우 참최복으로 성복했고, 23일에는 박최원의 모복을 代服하여 승중조모복인 자최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당시 가족들이 모두 병중에 시달리면서, 음식을 올리는 饋奠 등의 절차를 노비들이 대신했다.

5월 1일 박최원의 처 광산김씨가 광암의 여차에서 사망했다. 당시 역병이 만연하여 박성원 일가는 모두 병중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성원과 박종식은 석탄의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고, 광암에는 박태원만이 머물고 있었다. 박태원은 박성원이 작성한 홀기를 참고하여, 형수의 염습을 주관하였다. 3일에 겨우 습과 소렴을 행했는데, 앞서 상을 치르며 물력을 소진하여 새로 습렴의를 마련하지 못하고 딸들의 혼인을 위해 준비해둔 옷을 사용했다. 반함은 상주가 행해야 했지만, 박종식이 병중이어서 결국 박태원이 거행했다. 박성원은 예에는 맞지 않지

27) 『沙溪全書』 권31, 「喪禮備要·襲」 “己卯諸儒, 議定喪中死者, 襲斂, 皆用吉服, 喪服則陳於靈牀, 既葬而徹, 恐似得之.”

만, 부득이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4일에 대렴과 성빈을 했는데, 박취원의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5일에 계후자인 박종식이 奔哭하여 성복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30일에 분곡하고 6월 3일에야 자취삼년복으로 성복했다. 박종식의 처 안씨 역시 병을 앓다가 7월 6일에야 비로소 빈소에 와서 곡하였다.

6월 17일에는 박성원의 6째 아들인 만익이 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19일 아침에 습렴을 하고 저녁에 입관했다. 3상을 치르며 家力を 탕진하여 습렴은 예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간소하게 행했다. 또한 어려서 사망한 下殤에 해당되므로, 23일에 바로 장례를 치렀다. 神主 역시 만들지 않았고 부모 생존시까지 紙榜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虞祭는 지낼 수 있었지만, 상중이므로 지내지 않았다. 박성원은 3상의 줄곡을 마친 8월 29일에 요절한 아들을 위해 한 번의 우제를 지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역병이 창궐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병증에 시달렸다. 박성원의 처남인 李海佐와 李天佐도 이 기간에 사망했다는 점에서 역병으로 인한 병유상의 만연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병유상으로 인한 인력과 물력의 부족은 예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었다. 습렴 의례는 시신의 수습 차원에서 신속하게 거행되어야 했고 襲斂衣와 棺 등의 마련을 위해 많은 물력이 요구되었다. 성복 역시 친족들의 상복 준비를 위해 물자와 시간이 필요한 절차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들의 도움은 상례를 치르는 데 필수적이었다. 사돈인 안종무는 의원의 진찰과 喪具의 마련을 전담하였다. 박성원은 스승인 이재의 적극적인 권유로 동문인 안종무와 사돈을 맺었다. 이재는 안종무를 지극히 위태롭고 어려운 때에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신의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박성원은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실제로 크게 도움을 받았음에 고마움을 표했다.²⁹⁾ 또한

28) 1750년 5월 12일 “李德仲【天佐】訃至. 汝和【海佐】訃先到, 而時則室人病劇, 不知家中三喪外又連哭二甥.”

29) 1750년 7월 6일 “自三月以來, 病間醫喪治具, 他無可托, 皆令松友當之. 書信往來, 朝暮相屬, 未暇拘忌而終免染, 及此友嘗自許以信義, 先師力勸我以結姻. 今於至危至難之際, 果能不負所期, 而吾亦於此大賴其力矣.”

석실 일대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도움도 컸다. 知守齋 俞拓基(1691-1767)는 부의 를 보내고 상구를 지원해주었고, 완산이씨인 李成伯과 李伯仁은 상복 마련과 治棺 일체를 전담했다.³⁰⁾

〈표 1〉 「상중잡지」의 병유상 절차

연월	일	정씨(박성원의 모 / 박종식의 조모)	박최원(박성원의 형 / 박종식의 所後父)	김씨(박성원의 형수 / 박종식의 所後母)	만의 (박성원의 子)	
1750년 3월	19	屬纊(사시)				
		復(婢 世梅, 大夫人抹樓下鄭氏復)				
		易服(『四禮便覽』)				
		設奠(『사례편람』에 따른 始死奠)				
		沐浴(며느리가 婢를 데리고 거행)				
		襲(『喪禮備要』에 따라 원삼사용)				
		設魂帛(『사례편람』)				
	20	小斂				
		變服(『사례편람』)				
		遷尸牀(『사례편람』)				
		治棺				
		21				大斂
						設靈牀(『사례편람』에 따라 夕哭)
22	成服불가(喪服미비), 奠(『사례편람』)					
23	成服(『사례편람』)					
	塗殯					
4월	10		축광(해시)			
	13		습			
	15		소렴			
	16		대렴			
	22		성복			
	23		성복[박종식]			
5월	1		承重服	축광		
	3			습		
				소렴		
				대렴		
6월	3			성복[박종식] - 承重服		
	17				사망	
	19				습렴	

30) 1750년 3월 23일 “李(王+集)成伯步往其家, … 獨成伯與其堂侄修天伯仁, 因留近舍, 至成服護喪, 伯仁以院任, 董率役夫, 盡心治棺, 喪服裁縫, 手自爲之, … 俞相國賻儀之外, 凡係喪具, 多所資用, 至於成服前, 祭酒盛一大瓶而送之, 可謂曲盡矣.”

	23				입관 장례
7월	12	破殯(오시)			
	19	發引 諸具 준비			
	20	발인(광암에 다시 成殯)			
8월	5	定山, 擇日			
	13	加漆(3차)			
	20	破土(사시), 告先塋, 祠土地			
	22	開金井, 穿墳		가칠(3차)	
	23	地灰를 깔고 柳을 안치			
		朝祖			
		祖奠			
	24	遣奠			
		發引			
		下棺			
		加柩衣			
		贈玄纁			
		誌石(『사례편람』)			
		祀后土			
		題主/題主奠			
		返魂			
		初虞			
	25	再虞			
		埋魂帛			
三虞					
26					
28	卒哭				
29	祔祭			우제(1)	
9월	1		부제		
	13		生辰祭		
	24	石灘으로 靑연을 옮김			
1751년	9	寒食節祀			
3월	19	小祥			
	10		소상		
4월	17	石灘으로 사당의 신주를 옮김			
	5월	1		소상	
1752년	17	石灘의 새 사당 완공			
	3월	18	신주를 모실 것을 사당에 고향		
		19	大祥, 入廟		
4월	9		告祠堂		
	10		대상		
	29			고사당	
5월	1			대상	
	7	병유상이므로 禫祭 거행하지 않음			
6월	8		담제		
7월	7			담제	
8월	9	吉祭			

2) 發引-吉祭: 병유상의 輕重과 先後

『가례』에서는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지만, 병유상의 과정에서 장례 일정이 매우 늦어졌다. 장례에 앞서 7월 20일에는 歸葬의 예를 적용하여 정씨의 靈柩를 석탄에서 광암으로 옮겼다. 7월 12일 오시에 奠을 올린 후 破殯하였고, 20일 새벽에 출발하여 오시에 광암에 도착한 후 다시 성빈했다. 8월 5일, 광암 선산에 묘자리를 정하고, 8월 24일을 3상의 장례일로 결정했다. 박성원은 먼저 地師 李昌儒에게 물어 定山과 擇日을 한 후, 다시 천문학으로 이름난 進士 姜必淵과 同知 池道明에게 문의했다. 모두 24일 외에 다른 길일이 없다고 하자, 박성원은 3상의 장례를 같은 날에 치르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급하게 장례 준비가 진행되었다. 治葬의 절차로, 20일 사시에 흙을 파내고[破土], 후토신과 선영께 아뢰는 제사를 올렸다. 22일 金井機를 놓고 광을 팠으며, 23일 地灰를 깔고 槨을 안치하여 灰隔을 만들었다. 당시 풍수설의 영향으로 地氣를 통하게 하기 위해 바닥에 지회를 깔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성원은 『가례』를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槨의 사용은 『가례』와 어긋나지만, 古禮로서 흙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의미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허용되었다. 부부 합장 시에는 두 개의 槨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槨에 가운데를 판자로 막아서 사용했는데, 芝村 李喜朝(1655-1724)의 합장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회를 쌓을 때는 유척기의 권유에 따라 회 10斗, 세사 7斗, 황토 4斗를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3:1:1인 『가례』의 비율과는 다른 것으로, 유척기 집안에서 새로 개발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관에 옷칠을 더하는 加漆을 시행했다. 8월 13일부터 정씨의 靈柩를 3차례 加漆하고, 22일부터 박최원 부부의 靈柩를 3차례 가칠했다.

발인 전날인 23일에는 사당에서 조상을 알현하는 朝祖를 행했다. 원래 조조는 영구를 받들고 사당에 아뢰는 것이지만,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혼백으로 대신하는 『가례의절』의 방식을 따랐다. 길의 신에게 올리는 祖奠은 저녁상식과 겸행했다. 24일 아침 遣奠을 행한 후, 『사례편람』에 따라 남은 脯를 靈車에 함께 실었다. 上食 후 발인하여 午時 정각에 선산에 도착했다.

신시 초에 조모의 영구를 하관하고 柩衣와 銘旌을 정돈한 후, 승중손인 박종식이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드렸다[贈玄纁]. 이후 부모의 영구를 순서대로

하관하고 정돈한 후 현훈을 드렸다. 현훈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가례』에 ‘영구의 옆[樞旁]’으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었으므로, 다양한 예설들이 제시되었다. 김장생은 『가례』의 ‘구방’을 근거로 현과 훈을 나누어서 양쪽에 두는 방식과 『개원례』에 따라 영구의 동쪽에 현을 위로 훈을 아래로[上玄下纁] 두는 방식을 모두 인정했다. 송시열은 『가례』에 따라 영구와 괘 사이에 두되, 현은 오른쪽 훈은 왼쪽[玄右纁左]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윤증은 『儀禮』 「既夕禮」를 고증하여 영구 위 왼쪽에 상현하훈할 것을 주장했다.³¹⁾ 박성원은 『사례편람』에서 인용한 대로 김장생과 송시열의 예설을 절충하여, 영구의 동쪽으로 영구와 괘 사이에 상현하훈하여 두는 방식을 따랐다.³²⁾ 또한 석회 조각에 글자를 새겨誌石을 만들었는데, 이 방식은 당시 통용되는 것으로 『사례편람』에도 수록되었다.³³⁾

이어 후토신에 대한 제사는 한 번만 행했다. 조모와 부모 兩代의 장례로 합葬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신주를 쓰는 題主는 尹光彥이 행했다. 부인상이므로 外客이 제주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死生의 차이를 인정하는 송시열의 설을 근거로 하였다. 이후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반혼을 행했다. 세속에서는 반혼 시 남자의 신주는 말, 여자의 신주는 가마로 모셨지만, 박성원은 靈車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렇게 3상의 장례를 같은 날 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유상에서 장례는 先輕後重, 제사는 先重後輕의 원칙을 따른다는

31) 『家禮增解』 권10, 「喪禮·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輯覽, 按家禮既曰樞旁, 則似當以玄纁分置兩旁. 而今或並置於樞東之旁, 似以開元禮爲據. 然則其置之, 亦當如衾衣之上玄下纁也. ○退溪曰, 玄纁, 卷束而置棺左右, 比世人鋪在棺上, 此爲得之. ○尤菴曰, 置樞旁云者, 家禮之文自分明. 若置於樞上之一邊, 則當曰樞邊矣. 當從朱子禮, 置樞槨之間, 而玄右纁左.”; 『常變通攷』 권16, 「喪禮·下棺·主人贈」, “明齋曰, … 既夕禮, 至邦門, 君贈玄纁, 實于蓋下文, 既窆實器等, 皆言于旁, 而獨玄纁不言, 疑當置於棺蓋上, 如邦門時也. 此爲可據, 若於棺上之左偏, 爲玄上纁下, 則似合於禮意, 而且略有樞東之義矣.”

32) 『四禮便覽』 권5, 「喪禮·及墓」, “主人贈. (開元禮) … 主人受以授祝, 祝奉以入, 奠於樞東. 【(尤庵)曰, 置棺槨之間. ○(沙溪)曰, 上玄下纁.】”

33) 『四禮便覽』 권5, 「喪禮·治葬」, “刻誌石. … (按)誌今用燔瓷, 制極精好, 從俗爲宜, 且依俗制, 用片灰刻字亦可.”

것은 『예기』 「증자문」에 명시되어 있었다.³⁴⁾ 장례는 정을 빼앗는 일[奪情]이므로 자식 된 도리로서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상을 먼저하고, 제사는 정을 펴는 일[伸情]이므로 무거운 상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후 김장생, 송시열 등의 논의를 거쳐 ‘탈정’과 ‘신정’의 원칙에 따른 하관, 증현훈, 제주 등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³⁵⁾

문제는 승중조모상과 부상의 경우 重喪과 輕喪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은 服으로 보면 부상이 무겁고 義로 보면 조모상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寒岡 鄭述(1543-1620)가 부상을 가볍게 여겨 발인 때 앞서 가도록 한 것이 예에 맞는지를 질문했다. 慎獨齋 金集(1574-1656)은 “어찌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송시열 역시 “조모와 아버지 중에 누가 가볍고 누가 무거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참최인 父服이 重服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虞祭와 祔祭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 음식을 받아먹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머니보다 앞서서 아들을 제사할 수 없을 듯하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³⁶⁾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는 象生과 孝가 중시되면서, 참최와 자최이라는 상복의 경중이 재검토되었다.

박성원은 “부모상은 진실로 경중이 있지만, 부와 조모는 경중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하면서 상의 순서에 따라 조모의 의례를 먼저 시행했다. 발인 전의 조조와 조전부터 하관, 제주 등 모든 장례 절차에서 탈정과 신정을 구

34) 『禮記集說』 권4, 「曾子問」 “曾子問曰, 竝有喪如之何, 何先何後? 孔子曰, 葬, 先輕而後重, 其奠也, 先重而後輕, 禮也.”

35) 『沙溪全書』 권39, 「疑禮問解·喪禮·發引」 “問, 偕喪同日葬者, 在道雖當父先後後, 至其下棺, 則先母柩. … (答)來示得之.”; 『宋子大全』 권103, 「答尹爾和」 “蓋葬是奪情之事, 故先母後父, 而題主是伸情之事, 故先父後母.”; 『宋子大全』 권109, 「答黃周卿」 “同時發引則先父柩, 是老先生之說也, 葬時整柩衣·銘旌·贈玄纁等事, 皆係葬具則似當先母矣.”

36) 『常變通攷』 권16, 「喪禮·發引」 “問解續, 問並有父喪與祖母喪者, 其發引及葬時, 以何喪爲輕而先之邪? 以服則父喪爲重, 以義則祖母爲重, 誠難處. 寒岡云, 父喪當爲輕, 發引時亦先行云, 未知其果爾否. 答以倫序言之, 則寒岡之言似是, 而禮經先後之訓, 旣以奪情言之, 父喪祖母喪, 又異於並有父母喪, 未知如何. … 尤庵曰, 葬祭先後, 未知祖母與父, 孰爲輕重, 然以服言之, 則有齊斬之別, 或可以此斷之邪? 至於虞·祔, 則子雖齊聖, 不先父食, 似不可先母而祭子矣.”

분하지 않고 조모를 먼저 했다. “조모와 부는 이미 그 경중을 구분할 수 없으니 장사 지낼 때 조모를 먼저 하고 부를 나중에 한 것은 또한 경중으로써 그런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⁷⁾

부모의 경우는 경중이 명확했으므로 탈정의 선경후중, 신정의 선중후경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발인 전 조조, 조전은 신정으로 간주해서 부를 먼저 했고, 하관은 탈정으로 모를 먼저 했다. 증현훈과 신주를 쓰는 제주는 신정으로 보아 부를 먼저 했다. 발인과 반혼 시 영구의 이동은 탈정임에도 부를 먼저 했다. 송시열은 남녀가 동행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가는 경우는 없음을 강조했다.³⁸⁾ 그럼에도 조모의 영구를 부모보다 앞에 위치시킨 것은 ‘부의 효심’을 고려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표 2〉 3喪 장례 절차의 先後

	朝祖	祖奠	發引(柩行)	下棺	정돈	贈玄纁	祀后土	題主(奠)	返魂
조모	1	1	1	1			1	1	1
부	2	2	2	3	3	2		2	2
모	3	3	3	2	2	3		3	3

24일 매장 후 집으로 반혼하여 바로 3상의 初虞祭를 지냈다. 우제는 신령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사로서, 『가례』에 따라 3차례 거행되었다. 25일 再虞祭를 지내고 혼백을 집 뒤의 정결한 장소에 묻었다. 세속에서 묘소에 묻는 것과 달리, 『가례의절』과 송시열의 설을 따랐다. 26일 三虞祭를 지냈고, 28일에는 無時哭을 그치는 卒哭祭를 지냈다. 『사례편람』에 따라 성복 시 풀어두었던 요질을 줄곡 때 다시 묶었다. 29일에는 조모와 부의 祔祭를, 9월 1일에는 모의 부제를 지냈다.

37) 1750년 8월 24일 “葬是奪情之事, 故禮言先輕後重, 而今以承重孫言之, 則父母喪固有輕重, 而父與祖母, 難分輕重, 況喪有先後之別者乎? 故只得如是行之. … 行虞一節, 愆有可疑. 禮曰, 葬先輕而後重, 祭先重而後輕. 今以承重孫言之, 則祖母與父, 既不可分其輕重葬之, 先祖母而後父, 亦非以輕重而然也.”

38) 『家禮增解』 권10, 「喪禮·發引」 “問, 偕喪同日葬者, 在道雖當父先後, 至其下棺, 則先母柩耶? 沙溪曰, 來示得之. ○尤菴曰, 發引不同日, 則先母後父矣. 若同時在道, 則當先父後母矣. 生死無間, 豈有男女同行, 而女先於男之理乎?”

다. 부제는 사당의 조상께 추후 合祔할 것을 아뢰는 제사로서, 하루에 다하기 번 다하여 모의 부제만 따로 거행했다.

이렇게 병유상에서 우제-졸곡-부제의 순서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였다. 박성원은 여러 예학적 근거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3상을 같은 날 제사지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먼저, 예학적 근거로는 첫째, 부모의 경우 같은 날 우제를 지낸다는 朱子, 退溪 李滉(1501-1570),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虞祭의 절차적 특성을 강조했다. 우제는 신령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혼과 백이 분리되는 장례의 시점에 행해야 함을 지적했다.³⁹⁾

다음으로, 현실적 한계로는 첫째, 우제-졸곡-부제의 선중후경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였다. 중상의 우제-졸곡-부제를 모두 마친 후 경상의 우제-졸곡-부제를 지내는지, 중상의 우제 후 경상의 우제, 중상의 졸곡 후 경상의 졸곡, 중상의 부제 후 경상의 부제를 지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3번의 우제와 졸곡을 柔日과 剛日에 맞추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3상의 제사를 따로 모실 경우 20일이 소요되고 이에 맞추어 음식을 차리는 것이 집안의 물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⁴⁰⁾ 박성원은 병유상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예학적 원칙을 조율하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상중의 제사와 生辰茶禮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상중이어서 四時祭는 지내지 않았지만, 그 외 명절제사와 기제 등은 거행했다. 1750년 9월 9일, 사당에 제철 음식을 올릴 때는 복이 가벼운 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했다. 신주를 모신 奎연에는 상식을 곁해서 올렸는데, 김장생과 송시열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 이후 다른 명절제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행했다.⁴¹⁾ 1751년 정월과

39) 1750년 8월 24일 “朱子·退溪, 雖不以己意斷定許人, 而亦不以同日而祭爲悖於義也. 尤菴曰, 行父虞, 而日尙早, 則母虞行之於其日, 亦或一道. … 記所謂葬日虞不忍一日離之義, 未知果何如爾.”

40) 1750년 8월 24일 “且畢父虞·祔爲母虞·祔云者, 自父之初虞, 至祔祭盡行, 然後始行母之虞祔耶. 抑今日行父初虞, 明日行母初虞, 以至卒·祔而皆然者耶. 此又有未可知者. 且無論禮之如何, 三位虞·卒·祔各五大祀, 皆異日行之, 則其間又有剛·柔不用之日通爲二十日, 家中形勢實有難於逐日具饌. 不得已自初虞同日分先後行之.”

41) 1750년 9월 9일 “使服輕者, 先薦時食于祠堂, 於几筵則兼上食行之. 沙溪以別設爲無妨, 尤菴則以兼行爲言. 二者俱無不可, 而饌品亦不能盛備, 故只得兼說. 【以後俗節, 皆倣此行之.】”

3월 9일 한식날에는 묘소에 가서 술 한 잔을 올리는 단헌으로 명절제사를 지냈다. 기제는 역시 복이 가벼운 자가 단헌으로 대행했고, 박종식은 상복을 입은 체제사에 참석했다.⁴²⁾ 1750년 9월 13일에는 上食 후 간단한 음식을 갖추어 부의 생신다례를 행했다. 예에는 근거가 없지만, 象生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김장생 이하 先學들이 모두 허락하였음을 근거로 들었다. 생신다례는 생신을 맞은 신위에만 올렸고, 다른 신위에는 상식 때 약간의 음식을 추가했다. 이후 조모와 모의 생신다례도 같은 방식으로 거행되었다.⁴³⁾

1751년 3월 19일 조모의 小祥을 행했다. 소상에 갈아입는 練服은 『사례편람』에 따라 자취의 衣裳을 練布로 새로 만들었고, 腰絰을 葛絰로 바꾸었다. 練服에 대해서는 『家禮』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으므로, 冠과 中衣는 『禮記』 「檀弓」에 근거하여 練布로 만들고, 衰裳은 『儀禮喪服圖式』에 따라 연포가 아닌 大功服에 쓰는 七升布로 만드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논의에 대해 이재는 “연포로 관과 중의를 만들고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는다면 위아래와 걸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포로 최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⁴⁴⁾ 4월 10일 부의 소상을 행했고, 5월 1일 모의 소상을 행했다.

1752년 3월 19일 조모의 大祥을 지냈는데, 『사례편람』에 따라 祥服으로 백직령과 백립을 착용했다. 이어서 신주를 새로 마련한 사당에 모셨다.⁴⁵⁾ 『가례』에는 吉祭가 없으므로 대상 때 바로 신주를 사당의 해당 龕室에 안치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고례에 따라 길제를 보충한 『상례비요』에 근거하여 대상 때는 신주를 임시로 祖의 감실에 合祔했다가 길제 때 비로소 해당 감실에 안치했다. 박성원도 이에 따라 신주를 조고비의 감실에 합부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임시로 사당의 동쪽 벽 아래에 모셨다.⁴⁶⁾ 하루 전인 3월 18일에는 사당에 새 신주

42) 1750년 10월 1일 “以單獻，行曾祖考忌祀，使輕服者，代行植兒，是主祭之人，而以俗制喪服參祀而已。…【以後忌祀，皆如此。】”

43) 1750년 9월 13일 “生辰茶禮，禮無可據，而三年內，則自沙溪以下皆許之，以其像生時也。…故只行於當位，而他位則略以所具饌物補用於上食。【先妣·嫂氏生辰，亦做此例行之。】”

44) 연복 관련 논의는 김윤정, 2020 앞의 논문, 148-150면 참조.

45) 앞서 1750년 9월 24일 광암에 있던 3상의 楹연을 석탄에 옮겼고, 1751년 4월 18일에는 광암에 있던 사당을 석탄으로 옮겼다. 신주들을 임시로 壁龕에 모셔두고 사당의 신축을 시작했다. 11개월만인 1752년 3월 17일에 드디어 사당이 완성되었다.

를 耐廟할 것을 아뢰었다. 이 절차는 『가례』에 없지만, 미리 사당에 고해야 한다는 김장생과 송시열의 설이 『사례편람』에 인용되어 있었다.⁴⁷⁾ 4월 10일과 5월 1일에는 부과 모의 대상을 지냈고, 하루 전 사당에 아뢰는 절차를 거쳐 耐廟했다.

대상으로부터 1달을 건너 5월 7일에는 조모의 禫祭 관련 논의가 있었다. 병유상 중에는 前喪의 담제를 지낼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모의 담제를 지내지 못했다. 그러나 6월 8일에는 모의 상증임에도 부의 담제를 지냈다. 박성원은 이재가 李明元 등에게 보낸 3건의 편지를 새로 찾아냈고 이것을 근거로 後喪의 대상이 지난 뒤라면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⁴⁸⁾ 7월 7일에는 모의 담제를 지냈다. 8월 9일 吉祭를 통해 사당에 모셨던 高祖妣, 즉 박종식의 5대조비의 신주를 옮겨내고 3상의 신주를 제자리에 안치했다. 이상의 제사는 모두 박최원의 계후자인 박종식이 주관했다. 박성원은 最長房으로서, 高祖妣의 신주를 모셔와 廳事의 벽장에 안치하는 것으로 병유상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다.

3. 병유상의 쟁점과 예설 논의

1) 병유상의 상복과 變除

박성원의 모 정씨가 사망했을 때 장자인 박최원은 喪主가 되었고, 차자인 박성원 등과 함께 齊衰三年服을 입었다. 박성원의 차자이자 박최원의 계후자인 박종식은 조모복으로 자취기년복을 입었다. 그런데 박최원의 사망으로 박종식은 所後父를 위한 斬衰三年服을 입는 동시에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는 代服으로 조모를 위한 승중복인 자취삼년복을 입게 되었다. 박성원은 “상에는 하루도 주인이 없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복을 인정한 『사례편람』을 따랐다.⁴⁹⁾

46) 1752년 3월 18일 “入廟時, 當耐之龕, 狹窄難容, 不得已權安于東壁下.”

47) 1752년 3월 18일 “以新主耐廟之意, 告于祠堂.”; 『四禮便覽』 권6, 「喪禮·大祥」“(備要) 有事則告, 今新主耐廟, 不可不先告祠堂. ○(尤庵)曰, 前期告廟, 而翌日祥祭畢後, 卽入耐之爲順.”

48) 담제 관련 논의는 3장 2절 참조.

49) 『四禮便覽』 권4, 「喪禮·成服」“(按)代服一節, 自是變禮. 故家禮不載而人家之遭此變者,

이후 소후모 김씨가 사망하면서, 자취기년과 자취삼년복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다. 어머니의 상복은 아버지의 생존여부에 따라 齊衰杖期와 자취삼년으로 구분되었다. 아버지 생존 시 어머니가 사망하는 부재위모상의 경우에는 尊者인 아버지에게 壓屈되어 자취삼년이 아닌 자취장기복을 입었다. 문제는 부상 중 모가 사망한 병유상의 경우,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효자의 마음으로 인해 삼년상 중에는 그대로 부재위모복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있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을 근거로 아버지의 삼년상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무조건 자취삼년복을 입는다고 보았다.⁵⁰⁾

『사례편람』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장 의심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면서, 가장 원론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의례』의 경문 내용 그대로 ‘부출’ 즉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하루 사이라도 어머니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가공언의 소에서 ‘則’字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드러내려고 함”이라고 설명한 것은 김장생과 송시열도 이미 의심하였으므로, 『의례』의 경문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⁵¹⁾ 이러한 예설은 ‘어머니를 위한 자식의 人情’에 대한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인정의 측면을 극대화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⁵²⁾

이렇게 박종식은 승중조모복인 자취삼년, 부복인 참취삼년, 모복인 자취삼년의 3복을 동시에 입게 되었다. 당연히 3복을 한꺼번에 입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重喪을 위주로 하면서 상례 절차에 따라 해당 상복으로 갈아입는 방식을 취했다. 『가례』는 重喪 중에 輕喪을 만나면, 경상의 복을 입고 곡을 하고 절차를 마치면 중상의 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⁵³⁾ 실제로 박종식은 성복의 절차에서

當哀遑急遽之際，未易善處。茲附先儒說數段於此，以備參考。蓋喪不可一日無主，父或廢疾，未能執喪，或未終喪而亡，其子之爲父代服，斷不可已。”

50) 1750년 6월 3일 “依便覽定論，伸齊衰三年之制。”

51) 『四禮便覽』 권4, 「喪禮·成服」“(按)父喪中母死者，其服最爲可疑。茲附儀禮及先儒說數條於此，以備參考。蓋儀禮父卒則爲母之文，本自明白，而賈氏因一則字，曲爲解釋，以爲父服除而母卒然後乃伸三年。沙溪尤庵兩先生既以爲可疑，與泥滯於可疑之疏說，無寧直依經文之爲寡過。若一依經文，則父先卒而母後死者，雖一日之間，亦可以伸三年，未知果如何也。”

52) 관련 논의는 김윤정, 2020 앞의 논문, 155-157면 참조.

53) 『家禮』 권4, 「喪禮·成服」“重喪未除而遭輕喪，則制其服而哭之。月朔設位，服其服而哭之，

부복과 모복으로 참최삼년복과 자최삼년복을 입었다가 다음날 혹은 당일에 다시 승중조모복으로 갈아입었다. 또한 3상의 장례에서는 각 절차에 따라 해당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동시에 運柩할 때는 승중복을 입었다.⁵⁴⁾

그런데 葬禮, 小祥, 大祥 등의 의례를 행하며 슬픔을 줄여가는 상례 과정에서, 重喪과 輕喪의 위상이 재규정되기도 하였다. 김장생은 『의례문해』의 병유상 항목에 『通典』의 杜元凱 설을 인용하였다. 두원개는 아버지 장례 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경우 모복을 입고 우제를 지낸 후 다시 부복을 입도록 했다. 부상의 練祭 후에는 모복을 입다가, 부상의 상제에는 다시 부복을 입고 의례를 행한 후 다시 모복을 입고 상을 마치도록 했다. 이러한 주장은 부상이 중상임에도 연제 후에는 모상인 경상이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장생은 두원개 설을 근거로 승중한 조모와 모의 병유상에서 조모의 장례 이후라면, 모복을 입고 모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조모복을 입도록 했다. 조모의 연제를 지낸 후 다시 모복을 입다가, 모의 연제를 지내면 다시 조모복을 입고, 조모상을 마치면 모복을 다시 입도록 했다.⁵⁵⁾

박성원은 김장생의 예설을 근거로 승중조모복을 항상 입는 상복[常持服]으로 규정했고, 조모의 소상을 지낸 후에는 부복인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상은 가벼운 練服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슬픔을 줄여나가는 상례의 중요한 절차였다. 조모의 소상에는 연복을 입고 의례를 행하지만, 여전히 부모상 중인 상황에서 그대로 연복을 입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성원의 동문인 大齋 兪彥鏞(1714-1783)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효심을 위주로 하여 승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승중복을 입는 상황이므로, 아버지의 효심을 중시하여 아버지가 입어야 하는 練服을 입는다는 것이었다. 박성원은 “비록 부의 효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효심에 어찌 불안함이 심하지

既畢反重服, 其除之也, 亦服輕服,”

54) 1750년 8월 24일 “遺奠以次設行, 而植兒方持三衰, 隨時改服, 隨柩之時, 則以常持承重服.”

55) 『沙溪全書』 권37, 「疑禮問解·喪禮·附并有喪」, “杜元凱曰, 若父已葬而母卒, 則服母服, 至虞訖, 服父之服, 既練則服母之服, 父喪可除, 則服父之服以除之, 訖而服母之服. 【(按)祖母既葬而母未葬, 則當服母服, 母喪既葬, 則還服祖母服, 祖母服既練, 則還服母服, 母服既練, 則還服祖母服, 祖母服既除, 則還服母服, 以終喪.】”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⁵⁶⁾

박성원은 이 문제를 동문인 三遇堂 韓敬養(1719-1774)에게 문의했다. 한경양은 『사례편람』의 교정을 담당한 인물로서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한경양은 박성원이 승중복을 평상시 입게 한 결정이 이재의 예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이재가 閔百奮에게 준 편지에서 조모와 부의 병유상 시 常持服은 참최복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중복을 常持服으로 입는 것은 『통전』과 김장생의 예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모의 소상을 지낸 후에는 당연히 부복인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박성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유언집의 설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중시했지만, 예로 행하기에는 거리낌이 있다고 보았다. 후상의 小祥 전으로 여전히 최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상의 연복을 계속 입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⁵⁷⁾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박종식은 조모의 소상에 자최연복을 입고 행례한 후, 부의 참최복으로 갈아입었다. 부의 소상에 참최연복을 입고 행례한 후 모의 자최복을 입었고, 모의 소상에 자최연복을 입고 행례한 후에는 다시 승중복인 조모의 자최연복을 입었다. 대상과 담제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복을 바꾸어 입었다. 조모의 대상에 祥服을 입고 행례한 후에는 부의 참최연복을 입었고, 부의 대상에 상복을 입고 행례한 후에는 모의 자최연복을 입었고, 모의 대상에 상복을 입고 행례한 후에는 조모의 상복을 입었다. 담제의 경우 길흉이 섞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박성원은 연·상복의 변복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담제를 행할 때는 담복을 입고 이후 후상의 祥服으로 갈아입도록 했다.

병유상에는 각 상의 衰服을 마련했고, 소상-대상-담제의 變除에 맞추어 각각의 練服-祥服-禫服을 마련했다. 衰服은 참최와 자최의 차이가 있었고, 練服 역시

56) 1751년 3월 19일 “植兒既常持承重服矣, 今於練後, 則宜服後喪斬衰. 俞彥鏞士精以爲, 一以順父之孝心爲主, 仍持承重服爲當云. 然吾意則承重喪小祥前, 雖不常持父服, 而所服俱是未練之麤衰, 至於承重服既練之後, 仍服練服, 而不爲父服麤衰於旬月之間, 則雖曰順父孝心, 而於己孝心, 亦豈非不安之甚者乎.”

57) 1751년 3월 19일 “士涵曰, 先師之意, 則雖承重喪未練之前, 以常持斬衰爲當, 曾於閔百奮并有祖母與父喪之時, 以此教之. … 士精之說於順父之心, 則可謂嚴矣. 而禮必通之不得, 然後可行身, 有未練之喪而遽持練服, 來頭大祥之後, 亦將以所重有在, 而不服父母之練服, 乃服承重之祥服耶? 此恐決難行也. 其言似當, 故依當初所定常持斬衰.”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었지만, 祥服 이후는 동일한 복색이었다. 그럼에도 박성원은 모두 따로 마련하였고, 각 상의 절차에 따라 알아입도록 하였다. 반면 김원행은 祥服의 경우는 五服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성원은 때에 맞게 상복을 바꾸고 벗는 절차가 없으면 ‘섞이어 구별이 없는[混同無別]’ 문제가 생긴다고 경계하였다.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묘사되지만, 각 상례의 의절을 빠짐없이 실천하려는 예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⁵⁸⁾

〈표 3〉 박종식의 병유상 변제 과정

成服				小祥				大祥				禫祭*			길 제				
조 모	부	모		조 모	부	모		조 모	부	모		부	모						
자 최 기 년	참 최 삼 년	자 최 삼 년	자 최 삼 년	자 최 練 服	참 최 삼 년	참 최 練 服	자 최 삼 년	자 최 練 服	자 최 練 服	祥 服	참 최 練 服	祥 服	자 최 練 服	祥 服	祥 服	禫 服	祥 服	禫 服	吉 服
		승 중		승 중	부	모		승 중		부	모		승 중		모				

※ 조모의 담제는 지내지 않았으므로 담복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의 담제 이후 승중 담복으로 알아입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병유상 중 禫祭 시행

禫祭의 ‘禫’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大祥 후 한 달을 건너 27개월째 지내는 담제는 상을 마치고 담담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절차였다. 그러나 병유상에서는 전상의 담제를 지낼 때가 되어도, 後喪 중의 애통한 마음으로는 ‘담담하여 평안’한 의미의 담제를 지낼 수 없었다. 後喪까지 마친 후에는 이미 담제의 시기가 지났으므로, 『禮記』 「喪服小記」를 근거로 前喪의 담제를 지내지 못했다.⁵⁹⁾ 『상례비요』에서 김장생은 “전상의 담제를 후상 중에 지낼 수 없는 것

58) 1752년 5월 1일 「與韓士涵書」 “先妣禫前，則爲承重祥服，先兄禫前則爲斬衰後祥服，先嫂禫前則爲齊衰後祥服。若無隨時變除之節，則混同無別，此亦不可不細加商量，如何。金持平則以爲，與五服有異，可無變除之節云，此說然否。”

59) 『禮記集說』 권6, 「喪服小記」 “而除喪，已祥則除，不禫。”

은 역시 차마 凶事 때에 吉禮를 거행하지 못하는 뜻”임을 밝혔고 그렇게 시기가 지나면 전상의 담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보았다.⁶⁰⁾ 이러한 『상례비요』의 규정에 따라, 병유상에서는 前喪의 담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박성원은 『사례편람』을 근거로 後喪의 大祥 이후라면 前喪의 담제를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예설을 제기하였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에서 새롭게 규정한 變除 절차에 따라 대상에는 상복으로 백직령과 백립을, 담제에는 禫服으로 黻布笠을 착용했다.⁶¹⁾ 담복의 黻色은 열은 흑색이나 청색으로, 흰색보다는 길하지만 純吉한 색은 아니었다.⁶²⁾ 담제에 吉服을 입는 『상례비요』와 달리, 純吉하지 않은 黻服을 입는 것은 담제를 喪中에도 지낼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박성원은 잠시 禫服을 입고 前喪의 담제를 행하고 다시 後喪의 祥服을 입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⁶³⁾

『가례』에는 상복을 바꾸고 벗는 變除 절차가 매우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소상에는 練服, 대상에는 禫服을 진설하는데, 담제 시 복색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담복은 사마광의 설을 인용하여 다리를 드리운 참색 비단 복두[垂脚黻紗幘頭]·참색 포로 만든 옷[黻布衫]·포로 감싼 각대[布裹角帶]로 하였다.⁶⁴⁾ 김장생은 『상례비요』에서 『가례』의 조문을 따르면서도, 禫服으로 『국조오례의』의 白衣·白笠·白靴와 『가례의절』의 白直領衣 등을 첨부했다. 또한 이황의 설을 인

60) 『沙溪全書』 권34, 「喪禮備要·禫」“(按)前後有喪, 則前喪禫祭, 不可行於後喪中, 亦不忍於凶時行吉禮意也. 又不可追行於後喪畢後, 蓋過時不祭也. 朱子之意若鄭註開元禮, 皆然.”

61) 1752년 3월 19일 “行大祥奉主入廟. 家禮大祥條陳禫服, 而古今異宜, 故便覽則移置禫服一段於禫條, 而於此條則取皇朝制, 以陳祥服三字爲文, 而以儀節白直領·布帶, 五禮儀白笠·白靴, 開錄于下. 故依此受服, 而網巾亦以白布爲之.”: 1752년 5월 7일 “先妣禫事, 以諸議不一, 未得設行, 只設位哭除, 改着黻布笠·白布道袍·白帶.”

62) 『家禮增解』 권12, 「喪禮·大祥」“說文, 黻, 淺青黑色. ○尤菴曰, 黻色, 恐是我國玉色灰色之類也.”

63) 1752년 5월 1일 「與韓士涵書」“前喪禫時, 着禫服行事後, 還着後喪祥服, 似可矣. 但祥服與禫服有異, 彼則雖曰向吉而猶是喪中之服, 此則已用黻色而全爲喪畢之服, 彼固無嫌而此或未安耶. 禫服之後, 又有吉服一節, 則禫服亦係於喪之餘, 而非至吉之服, 暫借於行事之時, 亦不至大害耶.”

64) 『家禮』 권6, 「喪禮·大祥」“設次陳禫服. 司馬溫公曰, 丈夫垂脚黻紗幘頭·黻布衫·布裹角帶, 未大祥間, 假以出謁者.”

용하여 ‘담’조에 ‘陳吉服’ 조문을 새로 보충해 넣었다.⁶⁵⁾ 『상례비요』는 고례를 근거로 『가례』에 없는 ‘길제’조를 보완했지만, 길복은 길제가 아닌 담제에 입도록 규정하였다.⁶⁶⁾ 당시 조선에서는 이러한 『상례비요』를 토대로, 대상에는 『상례비요』에서 인용한 『국조오례의』의 백의·백립을, 담제에는 『상례비요』에서 보충한 대로 길복을 착용했다.⁶⁷⁾ 따라서 사실상 『가례』의 담복인 참포삼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제는 松江 鄭澈(1536-1593)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禮部郎中 胡僖가 “담제에 담복을 진설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大祥’조에 ‘陳祥服’ 조문을 새로 보충하고 ‘대상’조에 있던 ‘陳禫服’을 ‘禫’조로 옮겼다.⁶⁸⁾ 또한 『상례비요』에서 김장생이 ‘담’조에 보충해 넣은 ‘陳吉服’을 ‘吉祭’조로 옮겼다.⁶⁹⁾ 『사례편람』은 상제에 祥服, 담제에 禫服, 길제에 吉服을 입는 변제 절차를 완성함으로써, 『가례』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⁷⁰⁾

이제가 새로 보충한 ‘祥服’은 명나라의 제도를 근거로 하였고, 구체적인 복색은 구준의 『가례의절』과 국제인 『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백색의 直領·帶·

65) 『沙溪全書』 권34, 「喪禮備要·大祥」, “大祥之具 … (冠)黻色, (五禮儀)白笠, (服)黻布衫, … (丘氏)曰擬有官者, 用白布裏帽·白布盤領袍·布帶, 無官者, 用布巾·白直領衣·布帶.”; 「喪禮備要·禫」, “(設次陳吉服) 【(按)家禮無設次陳服, 可疑, (退溪)曰不依小大祥, 陳服易服之節, 不知禫服除在何時, 吉服着在何日?】”

66) 담제에 길복을 진설하지만, 길복은 제사 시에만 착용하였다. 김장생은 『예기』를 근거로, 담제에는 순길복을 착용하였다가 제사 후에는 다시 微吉服을 입고 길제에 이르러 완전한 길복을 입도록 했다(『沙溪全書』 권41, 「疑禮問解·喪禮·禫」, “或者, 言禫祭有哭泣之節, 不可遽著純吉之服, 而以雜記·間傳見之, 禫祭著純吉之服, 祭訖著微吉之服, 以至吉祭無所不佩也, 或者禫祭不可遽著純吉之說, 不可從也”).

67) 1752년 5월 1일 「士涵答書」, “今人於大祥則從國制, 於禫祭則從備要, 周公之織, 朱子之黻, 何爲而全沒也.”

68) 『四禮便覽』 권6, 「喪禮·大祥」, “陳祥服, (皇朝制) (儀節)白直領·布帶, (五禮儀)白笠·白靴, … (按)家禮此條云陳禫服, 而不無古今之異, 且在萬曆年間, 鄭松江赴京, 問於禮部則, 郎中胡僖答曰, 禫而陳禫服序也, 今當薦此, 祥事之日, 而先陳禫服, 人無不微疑其間, … 故但以陳祥服三字爲大文, 註以皇朝制, 以丘儀與國制, 關錄于下而禫服一段, 移置禫條.”

69) 『四禮便覽』 권6, 「喪禮·吉祭」, “設次陳吉服, … (按)此一節, 備要在禫條, 而今移置于此.”

70) 장동우, 2018 「행례서行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 가례家禮 연구의 특성 및 함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 『가례집요家禮輯要』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399-400면.

笠·靴로 규정되었다. 대상에는 祥服으로 백색을, 담제에는 『가례』의 禫服으로 참색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재는 國制이자 時俗이 된 白衣를 祥服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가례』의 담복을 회복시킴으로써, 國제와 『가례』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재의 새로운 예설은 당시 일반화된 『상례비요』와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사안이었다.

〈표 4〉 변제 절차의 비교

	小祥	大祥[後]	禫祭[후]	吉祭[후]
『禮記』 『雜記』	練服	朝服·縞冠[素縞·麻衣]	玄冠·黃裳[조복·綬冠]	현관·조복[玄端]
『家禮』	연복	禫服(참포삼)*	-	
『家禮儀節』	연복	담복(참포삼) + 백의	-	
『國朝五禮儀』	연복	담복(백의)	-	
『喪禮備要』	연복	담복(참포삼) + 백의	吉服[微吉服]	-
『四禮便覽』	연복	祥服(백의)	담복(참포삼)	길복

※ 대각선은 항목이 없는 경우, ‘-’은 관련 조문이 없는 경우를 표시했다. *이하 구체적인 冠·帶 등의 규정은 본문에 수록하였다.

박성원은 한경양에게 편지를 보내,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를 근거로 병유상의 담제 문제를 논의했다. 한경양은 『상례비요』의 변제 절차가 미진함을 비판하면서, 後喪의 大祥 후라면 前喪의 禫祭를 지낼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담제에 길복을 입는 것은 퇴계설을 따른 것인데, 퇴계의 시대에는 『가례』가 겨우 행해졌고 길제의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대상에 백의를 입고, 길제의 절차를 행하는데도, 담제에 바로 길복을 입어 담복을 입는 절차가 제외된 것은 『상례비요』의 미진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상례비요』를 비판하면서,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에 근거하여 후상의 대상 후에는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⁷¹⁾

71) 1752년 5월 1일 「韓士涵答書」 “若依備要禫祭陳吉服，則雖一時之頃着純吉之服，有非後喪未禫之人所能安於心者。然因禫祭陳吉服，即依退溪說也。退翁之世，家禮才行，無吉祭之節。禫服除在何日吉服着在何時之訓，果有由矣。今人則於大祥，不依家禮服禫服，而依五禮儀用

박성원은 이러한 한경양의 설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하여 당대의 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鹿門 任聖周(1711-1788), 櫟泉 宋明欽(1705-1768), 貞庵 閔遇洙(1694-1756), 김원행, 유척기, 屏溪 尹鳳九(1681-1767)와 민우수의 외조카인 광산김씨 金獻材까지 7인의 답장이 「상중잡지」에 수록되었다. 근기의 낙론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湖論 학자인 윤봉구가 참여하면서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중 송명흠을 제외한 6인의 학자들은 후상 중에 전상의 답제를 지낼 수 없다는 『상례비요』의 예설을 따랐다.⁷²⁾

박성원은 김원행에게 추가로 편지를 보내,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⁷³⁾ 박성원은 답제에 여전히 땀나고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가 있는데, 『喪禮備要』 대로 吉服을 입는 것은 미안하다고 보았다. 『상례비요』의 미진함을 비판하면서, 『사례편람』의 변제 방식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원행은 답제에 吉服을 입는 『상례비요』의 방식은 주자의 뜻을 따른 것이고 고례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례』에서는 상제를 마치고 나서 參복을 입으니, 답제에 반드시 吉服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禮記』 「雜記」의 玄衣와 黃裳은 답제에 입는 吉服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히려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에 대해 “지금 하필 이를 놔두고 굳이 예에 없는 예[無禮之禮]에서 찾으려 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⁷⁴⁾

박성원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무례지례’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가례』의 경우, 대상에서 參복을 진설하고 답제 이후 吉服이 없기 때문에 답제는

純素之服，又行吉祭，而於禫祭直用吉服，則禫服無可着時節，此不免半上落下，乃備要未盡處也.”

72) 1752년 5월 1일: 답서 중 일부는 발신인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鹿門集』 권4, 「答朴士洙【聖源○壬申】」; 『貞菴集』 권6, 「答朴士洙【聖源○壬申】」; 『櫟泉集』 권8, 「答朴士洙【聖源】」; 『屏溪集』 권16, 「答朴士洙【聖源○壬申】」; 『溪湖集』 권4, 「答朴士洙」).

73) 박성원과 김원행의 논쟁은 『溪湖集』의 편지를 토대로 검토된 바 있다(김윤정, 2013 앞의 논문, 114-116면). 그러나 박성원-한경양의 논의와 한경양-김원행의 논쟁에 대한 박성원의 반론 등은 「상중잡지」에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다.

74) 1752년 5월 1일 「金持平答書」 “且以家禮之文，則既祥而服黻矣，其禫之必服吉也，又可知矣。… 禫而服吉，又不違於玄衣玄裳之意，則備要之禫用吉服，實遵朱子之旨，而不背於古，愚未見其闕略也。今何必舍之而必求之於無禮之禮也.”

純吉에 해당한다는 김원행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가례』의 대상에 참복을 입는 조문을 따르지 않고 『가례』에는 없는 길제를 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가례』를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가례』에 따라 담제를 상을 마치는 순길한 예로 간주하고 있는 모순을 비판했다. 또한 『상례비요』에서 담제에 길복을 쓰는 것은 고례의 근거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반면, 명나라의 제도는 실제 행하는데 적합하여 『사례편람』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무례지례'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⁷⁵⁾

이에 김원행은 『사례편람』은 명나라의 제도를 사용하여 불가하지는 않지만, 『상례비요』가 時王之禮를 행하지 오래되었고 周公과 朱子の 뜻에 맞다는 점에서 고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사례편람』의 내용이 상중 담제의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심나는 것은 제쳐둔다[闕疑].”는 뜻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⁷⁶⁾ 박성원은 끝내 김원행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저 담제 전은 大祥를 지내기 전과 같고 담제는 길례에 속한다고 하면서, 상중에는 길례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大祥에 變除하는 예를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가례』에서 대상에 참색을 입는다는 의심스러움과 『비요』에서 담제에 길복을 입는 미안함을 소급하여 논하고 모두 『사례편람』에서 옮겨두는 조처에 이른 후에야, 그 설이 통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兩金(김원행과 김헌재)이 논한 바를 보면, 『가례』와 『비요』는 원래 闕略과 未盡함이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사례편람』의 이치는 과연 無禮之禮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 그러나 여러 견해들이 이와 같으니, 지금 만약 그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대상 후 담제 전에 喪人으로 자처하지 않았다고 이를 것입니다.⁷⁷⁾

박성원은 한경양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김원행이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를

75) 1752년 5월 1일 「與金持平書」, “今既不從家禮服黶之文, 又行家禮所無之吉祭, 而獨於禫祭看作終喪純吉之禮, 謂不可暫時借吉於後喪祥後, 則是果如何? 家禮之祥日服黶, 備要之禫用吉服, 若如盛說, 則非無古禮之可據, 而但古今異宜, 不無難行. 皇朝遺制, 實合遵用, 此便覽所以不免有變通移置之舉, 恐不可以無禮之禮而斥之也.”

76) 1752년 5월 1일 「金持平答書」, “今便覽之用皇朝舊制, 宜亦無不可者. 然備要之爲時王之禮, 蓋亦爲久, 而又有得於朱子·周公之意, 則雖無改, 自未爲失. … 雖以便覽之文, 此事亦無的證. 今必行之, 則未知於聖人闕疑之義, 何如也.”

77) 1752년 5월 1일 「與韓士涵書」.

‘무례지례’로 간주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만약 『상례비요』에 따라 전상의 담제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례편람』이 ‘무례지례’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반면, 전상의 담제를 그대로 행한다면 담제 전에 喪人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걱정했다. 이에 김원행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한경양에게 문의했다.

한경양은 김원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답장을 보냈다.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가 『상례비요』의 방식보다 예에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상례비요』에 따라 담제에 길복을 입을 경우, 상제와 담제는 흉과 길이 명확히 구분되는 의례로 인식되었고, 前喪의 禫祭를 지낸다는 박성원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 편지는 김원행에게도 보내졌고, 김원행은 한경양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장을 보냈다. 박성원은 한경양과 김원행이 주고받은 편지를 발췌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편지를 작성하여 다시 김원행에게 보냈다. 이로써 『사례편람』과 『상례비요』의 예학적 정당성에 대한 한경양-김원행-박성원 3인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경양: 오늘날 사람들이 大祥에는 國制를 따르고, 담제에는 『상례비요』를 따르니, 周公의 ‘織’과 주자의 ‘黹’은 어찌하여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김원행: … 오늘날에는 時王의 제도를 따라 백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제에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의례』부터 『가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치지 않았으며 沙翁 또한 감히 다른 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복을 입는 의절은 시행할 때가 없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은 새로운 예를 창조한 『五禮儀』에 있으니, 어찌 사옹의 잘못이겠습니까.

박성원: 祥服은 이미 국제를 사용하니 주자의 ‘黹’은 진실로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아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행할 수 있는 때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행할 수 있는 때는 담제가 아니겠습니까? 어 떤합니까? 지금 이미 상복을 6번 바꾸는 고례를 행하지 못하지만,⁷⁸⁾ 禫祭가 祥祭와 吉祭의 사이에 있으니 이 微吉之服으로서, 위로는 純素를 받고 아래로는 純吉을 잇는다면 次序가 어찌 매우 순조롭지 않겠습니까?⁷⁹⁾

78) 『禮記』 「雜記」에서 祥祭부터 吉祭까지 6번 상복을 바꾸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금 길한 복을 착용하다가 제사를 마치면 도로 조금 흉한 복을 착용하는 원칙에 따라 변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4> 참조.

79) 1752년 5월 1일 「答金持平逐條論士涵第二說書【每條先書兩友原說】」.

박성원은 김원행과 한경양을 중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김원행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김원행은 『상례비요』에서 담제에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의례』와 『가례』를 따른 것이고, 『가례』의 담복을 쓰지 못하는 것은 국제인 『국조오례의』를 따라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에서 담제에 ‘진담복’ 조문을 보충함으로써, 『가례』의 담복인 참복을 실천하고 변제의 차서를 완성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원행의 답장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례비요』를 따른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원은 결국 김원행이 제안한 ‘闕疑’에 따라 前喪(정씨상)의 담제를 지내지 못했다. 그러나 『사례편람』에 따라 담제에 黻布冠을 착용하여,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가 갖는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⁸⁰⁾ 그런데 後喪의 大祥 후 禫祭 전인 상황에서, 박최원의 담제는 거행되었다. 박성원은 이재가 鄭存謙, 崔受復, 李明元에게 보낸 편지를 새로 발견했고, 後喪의 대상 후 前喪의 담제를 지내는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존겸은 두 祥祭가 같은 달에 있다면 뒤의 禫祭를 지내기 전에 앞의 담제를 지낼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이재는 “앞의 담제가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니 어찌 감히 빠뜨리겠습니까?”라고 답하여 후상의 담제 전에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음을 인정했다. 박성원은 이 편지들을 찾지 못해 필요없는 논쟁을 벌였고 끝내 前喪의 담제를 지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⁸¹⁾

다만 앞서 조모의 담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부의 담제를 거행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 定論을 얻었으니 지난 것은 미치지 못하지만, 오는 것은 따를 수 있다. 만약 전상의 담제를 행하지 않았다고 후상의 담제까지 모두 폐한다면 이것은 闕疑가 아니라 바로 잘못을 합리화 하는 것이

80) 종손인 박종식은 그대로 祥服을 입지만, 박성원은 형과 형수를 위한 상복을 이미 마쳤으므로 어머니의 담복을 입을 수 있었다.

81) 1752년 6월 8일 “行伯氏禫事. 先妣禫後, 追得先師答人書三條於本家所藏亂藁中, 蓋吾與士涵諸友之偶未得見者也. 其書鄭存謙【今改存謙】問曰, 斬衰與承重祥日, 既在同月, 則禫祭亦當行於同月, 禫祭先後從祥日之先後而次第行之耶. 禫服既就吉, 則後禫之前, 行前禫, 而服禫服, 雖一時暫着, 似未安云云. 答曰, 前禫既非過期, 則安敢闕之. 禫事亦當從祥之先後, 而次第行之, 至於同日則不可矣. 答崔受復之問大意亦同. 又答李明元之問曰, 前喪禫當行於後喪大祥後, 雖同月內, 此則無嫌矣. 此三條如是分明, 而惜未得早見, 徒費許多閑商量, 終不免失着於終喪大節, 痛恨何極.”

다.”라는 점에서, 부의 담제를 지내도록 했다.⁸²⁾

박성원은 자신의 예설과 行禮의 타당성을 강조하고자 관련 논의를 모두 「상중잡지」에 수록했다. 『사례편람』을 실천하고 이제 예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지만, 당시 『상례비요』의 위상은 『사례편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후 박성원은 『예의유집』의 병유상 항목에서 後喪의 大祥 후 前喪의 담제를 허용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⁸³⁾ 『예의유집』에는 박성원의 예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집안의 행례가 현재의 예설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박성원의 「상중잡지」를 통해 병유상의 실제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박성원의 모 정씨의 상례는 성복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미리 상구를 준비해두었으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박성원은 스승인 현재의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상례비요』와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상례 절차를 진행하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형 박최원 부부의 잇단 사망으로 병유상이 시작되면서, 물력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변용이 속출하였다. 습렴과 성복의 날짜를 지키지 못했고, 성빈 장소에서 대렴을 행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당시 빈번했던 병유상의 상황에서는 예학적 실천보다 현실적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박성원의 차자 박중식은 박최원의 계후자로서 3상의 상주가 되었고, 박성원은

82) 1752년 6월 8일 “或謂先生之言雖如此, 前喪禮既不得設行, 則獨行後喪禮, 有所未安, 不害其并以闕疑處之, 此則有大不然者. 今此甲乙兩論, 設令皆有可據, 在吾輩尊所聞之道, 固當從之勿疑, 況吾本來所見與士涵·晦可同, 今又得此定論, 往雖不及, 來猶可追. 若復以前禮之未行, 而并與後禮而廢之, 則此非闕疑正是遂非, 其爲不安, 尤有甚於前, 故依禮備行.”

83) 『禮疑類輯』 권17, 「喪變禮·并有喪·并有重喪中前喪禮祭行廢」 “… 陶庵曰, 前禮既非過期則安敢闕之, 禮事亦當從祥之前後次第行之, 至於同日則不可矣. 又曰, 前喪禮當行於後喪大祥後, 雖同月內此則無嫌矣. 【答李明元○以上禮祭當行.】”

실제 상례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3상의 장례를 같은 날에 치르면서, 3상의 輕重과 절차의 先後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병유상의 경우, 奪情인 장례는 先輕後重, 伸情인 제사는 先重後輕을 원칙으로 했다. 부상과 모상은 경중의 구분이 확실했지만, 승중조모상과 부상의 경우는 경중을 정하지 못한 채 조모상을 첫 번째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장례 후 우제-줄곡-부제 역시 같은 날 거행했는데, 물력의 한계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예학적 원칙을 조율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소상-대상-담제-길제의 절차는 『사례편람』의 變除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가례』에 없는 길제가 보충되면서, 대상 때 임시로 사당에 신주를 합부하고, 길제 때 高祖妣의 신주를 遞遷한 후 3상의 신주를 제자리에 안치했다.

이러한 병유상의 과정에서, 3상의 상복과 變除 절차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을 근거로 代服하여 조모를 위한 承重服을 입도록 했고, 부상 중 모상의 상복을 자취삼년으로 정했다. 승중조모복을 중시하여 常持服으로 삼았고, 상례 절차에 따라 해당 상복으로 갈아입는 방식을 따랐다. 小祥 이후에는 變服하여 제사를 지낸 후, 다시 후상의 무거운 상복으로 갈아입는 복잡한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또한 병유상 중 禫祭 시행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를 근거로 後喪의 大祥 이후라면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예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상례비요』의 통설과 다른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박성원은 한경양과의 논의를 통해 『사례편람』의 변제 절차가 『상례비요』의 방식보다 예에 합당하다는 이론을 세우고, 김원행과 논쟁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을 실천하고 이제 예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지만, 당시 『상례비요』의 위상은 『사례편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박성원은 「상중잡지」를 통해 실제 병유상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예의유집』에서 병유상의 논점에 대한 여러 예설들을 집대성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수록하지 않았다. 반면 「상중잡지」에서는 자신의 축적된 예학적 지식을 토대로 합당한 예설을 선택하여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과의 예설 교류가 이루어졌고, 행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상중잡지」는 이재의 『사례편람』을 행례의 원칙으로 삼았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스승인 이재 예학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사례편람』은 김장생의 『상례비요』와 상당한 예설적 차이를 보였고, 박성원은 이에 따른 비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이재 예학의 학문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병유상에 따른 인력과 물력의 부족은 예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되었다. 불가피한 경우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례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朴聖源, 「喪中雜識」, 『四禮便覽』, 並有喪, 變禮

투고일(2020. 1. 31), 심사시작일(2020. 4. 8), 심사완료일(2020. 4. 28)

<Abstract>

The Actual State and Ritual Theory of Duplicated Funerals
in Late Joseon Period

– Focused on the *Sangjungjobji* of Kyumjae Park sungwon –

Kim Yunjung *

Through the *Sangjungjobji* written by Park sungwon, this paper reviewed the discussion of the actual and major issues of the duplicated funerals. Although the process of wearing mourning clothes was a little delayed, funeral items were prepared in advance so the funeral of Park sungwon's mother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escribed procedures. Park Sungwon conducted and recorded the procedure of the funeral, focusing on *Sarepyeonram*, the writing of his teacher, Lee Jae. However, after the death of his older brother, Park Choiwon, and his wife, the duplicated funerals began, resulting in a series of variations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manpower. They failed to keep the funeral procedure and performed anomaly rites. In those days of frequent duplicated funerals at the time, it could be seen that practical constraints played a greater role than in ritual practice.

Park Jongsik, Park Choiwon's successor and the second son of Park Sungwon, became a chief mourner of duplicated 3 funerals, and Park Sungwon led the whole ceremony. In holding 3 funerals,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each importance of funerals and set the order of procedure. The Father's funeral was clearly more important than the mother's, Since the grandmother's funeral and the father's funeral could not be determined, the grandmother's funeral was the first to proceed with all the procedures.

Park Sungwon wanted to prepare new guidelines for the duplicated funerals through *Sangjungjobji*. In the case of *Yeuiryujip* written by Park Sungwon, he did not reveal his judgment, only organizing various examples of the issues of the duplicated funerals. On the other hand, in *Sangjungjobji*, he intended to select and practice reasonable example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based on its accumulated ritual knowledge. In addition, if no evidence was found, several scholars were consulted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new practice.

In *Sangjungjobji*, Park Sungwon emphasized the legitimacy of his teacher's studies through active practice of *Sarepyeonram*. *Sarepyeonram* showed a considerable difference from *Sangrebiyo* written by Kim Jangsang, and Park Sungwon focused on securing the academic superiority of Lee Jae, while actively responding to the criticism. However,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material due to the duplicated funerals became a serious constraint on the application of the ritual book. If it was inevitable, it could be seen that realistic problems are recognized and funeral procedures are carried out as far as possible.

Key Words : Park sungwon, *Sangjungjobji*, *Sarepyeonram*, Duplicated Funerals, Transformed Ritual